

의안번호	2204752
의 퇴 인	민형배 의원
회 답 일	2024.10.29.
추계번호	24C439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4조 (하급교육행정 기관의 설치 등)	(제2항)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의무규정
		(제3항)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학부모 등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5항)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의무규정
2	안 제35조 (교육장의분장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u>지원</u> 과 지도·감독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¹⁾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4조 (하급교육행정 기관의 설치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

1) 안 제35조제1호와 관련하여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현재 대부분의 시·도교육청(17개 교육청, 165개 설치)은 학교지원 전담조직으로 교육지원청내 센터를 두고 학교공동 관리 업무를 이관·수행하고 있으나 교육청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청 인력과 예산 등 여건에 따라 조직의 위상과 규모, 지원범위 등에서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육부는 교육장 분장사무에 '지원'을 추가하여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을 명시하고 학교지원전담기구의 법령상 설치 근거를 마련할 예정임(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2024.9.26.) 이에 교육부의 교육지원청내 학교지원 전담조직 설치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거나 기존 경비로 충당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2024년 현재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전국 교육지원청 176개 중 통합교육지원청은 총 37개임

[표1] 교육지원청 설치 현황

관할구역		교육지원청	대상 지역(시·군·자치구)(개)
단일 관할		139개	경기 19, 인천 2, 강원 16, 대구 2, 충북 9, 충남 13, 전북 14, 전남 22, 경북 22, 경남 18, 제주 2
복수 관할	2개	24개	서울 8, 경기 6, 인천 2, 대구 2, 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 각 1
	3개	11개	서울 3, 부산 4, 대구·광주·대전·울산 각 1
	4개	2개	인천 1, 부산 1
	소계	37개	* 수도권(54.1%): 20(서울11, 경기6, 인천3), 수도권 외(45.9%): 17(광역시14, 도3)
총계		176개	* 통합교육청의 비율 - 수도권: 서울 100%(11/11), 경기 24%(6/25), 인천 60%(3/5) - 수도권 외: 광역시 93.3%(14/15), 도 0.25%(3/120)

자료: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2023.9)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통합교육지원청이 시·군·자치구별 교육지원청으로 분리·설립될 수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신설될 교육지원청의 수 및 지역, 필요 예산규모 등에 대한 예상이 어려워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2024년 현재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 중 분리·신설될 지원청의 수와 이의 규모에 대한 추정이 필요
 -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3447호)은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2개의 교육지원청으로 분리·신설하는 내용으로, 동 개정안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로 5년간 838억 3,400만원이 추계된바 있음²⁾

2) 부지매입비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포함시 추가재정소요는 증가할 수 있음

- 다만, 현시점에서 분리 신설될 교육지원청의 수나 지역, 신설·폐지될 교육지원청의 조직 및 인원수 등에 대한 예상이 어려움
 - 분리·신설될 교육지원청은 관할구역의 인구, 지역특성 등에 따라 담당하게될 업무의 양, 조직 및 인력 규모 등이 달라질 것이며, 이에 소요예산 또한 다르게 책정될 수 있음³⁾
- 이에 동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

3) 보도자료(2024.9.26.)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을 지방 이양할 예정이며, 분리 교육지원청이 시·군·구청 청사 공간을 활용하거나 인근에 설치되도록 협력을 유도할 계획이며, 이 경우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등이 소요되지 않아 건축관련 비용도 상이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임